

	법률동향	2026. 2. 27.(금) 법무과장 윤재순(☎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3월 주요 시행 법령

- 고등교육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62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수학능력시험 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초·중등교육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는 학교회계 등의 업무 처리 시에 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제정이유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 다.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9조).
- 라.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마.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등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바.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을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사.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아.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한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원대상학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 여권법 시행령 -

[시행 2026. 3. 1.] [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2. 1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로서 면수가 26면인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의 3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는 한편, 여권 발급 사무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분에 비례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1.]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량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51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66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로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5741호, 2025. 9. 9.,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의 개요, 착공일, 준공 예정일 등을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의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50호, 2025. 9. 16., 일부개정]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13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식품안전기본법 -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7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정의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제2조).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및 제8조).
- 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된 사람이나 사례관리를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및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 문화기본법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폐기물관리법 -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구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일괄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요건이나 절차·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일괄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기 기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2호, 2025. 3. 2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6.]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 선택권 보장,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보호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제4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다.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911호, 2025. 12. 16.,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병역 복무 자료, 실종아동 등에 관한 자료 및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정보에 같은 법에 따른 통합지원에 관한 신청·발굴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5897호, 2025. 12. 9.,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종합판정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제2조)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나. 통합지원의 직권 신청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본인,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이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정함.

다. 종합판정의 세부 사항(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영양 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함.

라.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의 제출 등(제6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 등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 2)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등으로 정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7.] [보건복지부령 제1137호, 2025. 12. 9., 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본인, 그 친족 및 후견인 등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통합지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2)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관할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통합지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5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실시하는 통합지원 실태조사에는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통합지원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통합지원의 신청(안 제7조)

- 1)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및 후견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나 그 친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로 정하고, 통합지원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 서류 등을 정함.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안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바.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정하고, 전문기관은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및 제공 등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 3. 29.] [국토교통부령 제1472호, 2025. 3. 28.,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